

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### 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200 → 2,300원
- 주관식(1과목 위원당) 40,000원 → 45,000원

### 나. 문제 채점 수당

- 객관식(과목당) 40원 → 22원
- 주관식(10부까지 기본료) 22,000원 → 25,000원

다. 면접(실기)시험수당(6급이하) 10,000원 → 15,000원

라. 문제편집수당(일당) 6,000원 → 7,000원

마. 문제선정심의회수당(과목당) 30,000원 → 35,000원

### 바. 감시 수당(일당)

- 공 휴 일 9,000 → 10,000원

## 3. 근거법령

-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

첨부 : 1.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2. 신규조문 대비표

3. 기타 참고자료

#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